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9. 14. ~ 9. 21.)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령 제 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공 소 청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법원 발 신 ○○공소청
제 목 사회봉사의 허가 청구 검 사 (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회봉사 신청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합니다.

사회봉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죄 명				
사건번호			확정된 벌금액	
징제번호			납부해야 할 벌금액	
검사의 납부명령일		년 월 일		
신청인의 신청일		년 월 일	납부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허가받은 경 우 그 기한	☐ 납부 연기 년 월 일까지 ☐ 일부 납부
참 고 사 항				

210mm×297mm[백상지 80g/㎡]

자료 등 제출 요구서 (법 제5조제2항)			
수신처			
문서번호		요구일	
요구기관명	○○공소청 지청		
요구자	근무 부서	직 책	성 명
담당자			
책임자			
요구내용	사회봉사 신청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요구대상 기간	20 . . . ~ 20 . . .	
	요구의 법적 근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사회봉사 신청인의 서면 동의)	
	사용 목적	벌금납입 능력 확인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참고사항	○ 문의전화: ○ 팩스: ○ 전자우편:		
첨부서류	○ 자료 등 제출 동의서 1부.		
○○공소청 검사 (인)			

징제번호:

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통보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하께서 신청한 사회봉사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각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각 사유 -

- ☐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였음.
- ☐ 사회봉사 신청기간이 지났음.
- ☐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하였음
 - _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_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 _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 _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단,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외)
- ☐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음.
- ☐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년 월 일

○○공소청 점 사 ○ ○ ○

담당: ○○○ (직통전화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검사 결정		
가	부	비고

제 호 년 월 일

수 신 ○○공소청 발 신 ○○보호관찰소장(인)

제 목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사회봉사 대상자	성 명		징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회봉사 허가일	년 월 일	집행기간 만료예정일	년 월 일	
집행 연장기간	00개월(년 월 일까지)			
연장의 필요성				
사회봉사 집행 상황의 요지				
담당 보호관찰관 (인)				

○ ○ 공 소 청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보호관찰소장 발 신 ○○공소청
제 목 벌금의 전부 납입 사실의 통보 검 사 (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의 전부를 납입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사회봉사 대 상 자	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벌금 전부 납입 내용 비 고	징 제 번 호	
	납부할 벌금액	
	허가받은 사회봉사시간	
	이행한 사회봉사시간	
	납 부 일	
	납부한 벌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사회봉사 대상자	성 명		징 제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원 래 의 결정내용	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			확정된 벌금액	
	사 회 봉 사 허 가 일		사회봉사시간		집행 기간 만료예정일

- 취소 사유 -

☐ 사회봉사 허가를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음.

☐ 사회봉사 집행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집행지시에 따를 의무, 주거 이전 및 해외여행 시 신고의무)을 위반함.

☐ 구금 등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음.

※ 집행 상황 요지 등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첨부

○ ○ 공 소 청

수 신 ○○법원

제 목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청구

위와 같이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공소청
검사 (인)

기각 사유	
-------	--